

수원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나59660 판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나5966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96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선

피고, 피항소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남은지, 최영현

변론 종결 2023. 1. 18.

판결 선고 2023. 2.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96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7. 31. 접수 제22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D, E, F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제4행의 '피고의'를 '망인의'로, 4면 제17행의 '보이는 점,'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5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하정

판사진현지

판사김수정

별지